



Global Packaging News

Russia

맥주와 저알코올 음료에 라벨링 시작
맥주제조업체들, 라벨링 시스템 의무 등록

러시아는 3월 1일부터 맥주 제조사 및 저알코올 음료 생산업체들의 '체스니 즈낙(정직한 표시를 의미하는 의무 라벨링 제도)' 라벨링 시스템 의무 등록을 시작했다.

러시아 정부는 1개월 동안 이를 시행하고 4월 1일부터는 케그(맥주의 보관·운송을 위한 폴리머 및 금속용기)에, 10월 1일부터는 유리 및 PET 용기에, 2024년 1월 15일부터는 다른 포장 용기(캔맥주 포함)에 제품 라벨링이 시작된다.

이 기한은 러시아 산업통상부, 첨단기술개발센터(CRPT), 맥주생산협회의 협의로 설정된 것으로 이러한 의무 라벨링에 무알코올 맥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3월 1일 이미 시스템에 약 1,000개 기업이 등록했는데, 이는 전체 맥주 제조업체의 약 절반이다. 이 중 케그에 맥주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700개

이상이며, 전체 기업 수의 75%가 이러한 제품을 제조한다.

첨단기술개발센터는 양조업계에 라벨링을 위한 장비를 제공하는 2가지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무이자 할부. 3년 기한으로 첫해에는 낼 필요 없으며, 2년 차와 3년 차에 균등한 비중으로 납부 ▲연간 30만 데카리터(미터법에 의한 부피 단위, 1데카리터는 1리터의 10배) 미만을 생산하는 중소 양조기업에 라벨용 장비지출의 50% 공동융자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2월 28일에는 최근 2년간 이루어진 맥주와 저알코올 음료의 라벨링 실험이 완료됐다. 이 기간에 222개 생산업체와 27개 수입업체를 포함해 총 359개 기업이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실험의 일환으로 모든 유형의 라인에서 모든 인기 포장 유형에 코드 적용이 이뤄졌으며, '체스니 즈낙'과 단일국가자동정보시스템(EGAIS)의 통합이 확립됐다. 총 94건의 실험은 66개 제조업체와 4개의 수입업체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첨단기술개발센터는 통합기업들과 공동으로 다양한 규모의 비즈니스를 위한 완제품의 기술 솔루션을 개발했다. 소규모 양조장의 경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복합체 비용이 16,000루블(한화 약 28만원)부터, 중견 기업은 103,000루블(한화 약 177만원)부터, 대기업은 675,000루블(한화 약 1,162만원)부터 시작된다. 이 복합체에는 라벨링 작업을 위한 모든 필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며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첨단기술개발센터에 따르면 라벨링 도입은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재무부의 금융연구소 계산에 따르면 라벨링이 비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6년간 0.43%를 넘지 않는다.

또한 라벨링 도입에 따른 예산 효과는 연간 386억 루블(한화 약 6,647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국가 및 기업 재정수지는 2,651억 루블(한화 약 4조 5,677억원)에 달할 것이다.

맥주 및 저알코올 음료의 라벨링 도입 필요성은 맥주 및 맥주 음료의 불법 거래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 공산품 불법 거래 퇴치 분야의 국립과학역량센터(NNCK)에 따르면, 2021년의 불법 거래는 전년대비 9.4% 증가하여 전체 생산량의 16.6%였다. 러시아 정부는 맥주의 불법 거래로 인한 예산 수입 감소가 연간 300억 루블(한화 약 5,1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체스니 즈낙' 시스템은 러시아에서 2019년 불법 상품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유제품, 생수, 약품, 담배, 신발, 경공업 제품, 모피코트, 타이어, 향수, 카메라에 적용된다.

시사점

현재 러시아 정부는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세수 확

보를 위해 '체스니 즈낙'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등록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현재 유제품, 의류, 담배, 카메라 등에 이 제도가 적용되었으며 2024년까지 라벨링 시스템을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할 계획이므로 한국 기업들 역시 이 제도를 염두에 두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Japan

식품업계, 친환경에 대한 관심과 효과 캔 경량화로 CO₂ 배출량 줄여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더불어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식품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다. 이에 일본에서 최근 ESG와 관련해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는 상품과 해당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코카콜라는 기존 석유화학으로부터 만들어진 페트병에 비해 1개당 약 60%의 CO₂ 배출 절감으로 이어지는 100% 리사이클 PET병을 새로 출시했다.

특히 상자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는 라벨이 없는 상태로 판매를 실시해 추가적인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있다.

미시마 식품에서 판매하고 있는 리필용 패키지 중 하나는 친환경 대응 방안의 하나로 종이 포장재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사용하는 종이는 다른 종이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미표백 크래프트 지로 대표적인 친환경 소재다.

일본의 알루미늄 캔 제조회사인 도요세이칸(東洋製罐)사는 올해 1월 음료 캔의 아래 부분을 기존

에 비해 얇게 하고, 동시에 강도도 높여 경량화가 가능하게 했다. 해당 회사는 ‘캔 저내압 강도 향상 기술(CBR=Compression Bottom Reform)’을 이용한 알루미늄 음료캔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생산 개시했다.

CBR의 도입으로 캔의 중량은 현행 캔 11.5g에서 10.9g으로 0.6g의 경량화를 실현했다. 이에 따라 캔 당 생산 시 CO2 배출량이 현행 캔에 비해 3% 가량 줄었다. 향후 CBR을 적용 가능한 해당 회사 제품군 모두에 적용한다면 CO2 배출량은 연간 약 4만톤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친환경과 관련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동일 제품이라도 환경에 대해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바가 있는 제품은 소비자들에게서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친환경 제품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친환경과 더불어 비용절감을 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USA

플라스틱 포장 용기에 대한 재활용 규정 플라스틱 포장 용기의 재활용 책임 규정

미국 자원재활용 및 회수부(CalRecycle)는 공공자원법 제14547조에 따라 (1)재활용 재료와 플라스틱 재료의 회수업체 및 제조업체에 대한 정의 (2)음료 제조업체에 대한 기록 보관 및 규정 준수 요건 (3)음료 제조업체와 플라스틱 재료 재생업체 및 PCR(post-consumer recycled, 최종 소비 후 재활용된)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보고 요건 (4)식품 및 병류의 등급에 대한 정의 등을 명시한 《플라스틱

합량 보고 및 규정 준수 영구 규정(Assembly Bill 793)》을 제안했다.

제안된 규정은 캘리포니아 규정집(CCR) 제5장 2부 14조의 하위 항목을 일부 수정 및 추가하여 공공자원법 제14547조 및 1449.3조를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며, 제안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 5가지와 같다.

▲음료 제조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의 형태와 방식을 확립하고, CRV(California Redemption Value, 재활용 환급금) 대상 플라스틱 음료 용기에 사용된 PCR 플라스틱의 증거로 보관해야 하는 문서 종류를 명시함.

▲플라스틱 회수자에 대한 정의를 채택함. 또한 CalRecycle로부터 식별 번호가 제공될 것임을 명확히 하고, PCR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보고 요건을 확립함.

▲재생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정의, 식품 등급 및 병 등급에 대한 정의, CalRecycle이 PCR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식별 번호를 제공한다는 설명, PCR 플라스틱 보고서 제출의 형태 및 방식을 설명함.

▲음료 제조업체가 행정처분 감경 요구서와 함께 시정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는 형태와 방식을 규정함.

▲음료 제조업체, 플라스틱 재료 회수업체, PCR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필수 보고서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함 등이다.

제안 규정에 대한 의견은 2023년 3월 21일까지 수렴한다. 이번 제안 규정 외에도 미국은 재활용과 환경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규정을 지속해서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료 및 사전 포장된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미국의 재활용 및 포장재 관련 현지 규정의 변동사항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